

# 「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건강증진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주민의 건강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주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서 규정한 내용을 이행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개정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 변경

→ (개정) 평창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

- 2) 목적과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- 3) 건강생활실천 지원 내용(안 제3조 ~ 제9조)
- 4)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내용(안 제10조 ~ 제17조)
- 5) 영양관리 내용(안 제18조 ~ 제2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주민의 건강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기존의 ‘건강생활실천협의회’만을  
규정한<sup>1)</sup> 종전 조례에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서  
정한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으로는,

제명을 비롯하여 목적과 정의를 새로이 하고,

건강생활실천 지원,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, 주민의 영양관리에  
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함.

#### ○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

필수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우리 군 건강증진 정책의

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--

1) 1) 「평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」 1996. 6. 29. 제정, 2017. 12. 01. 현행

○ 검토결과,

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였고,  
조문의 내용 및 형식 등에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이 없으므로,  
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